

진 의

심의결과 위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제 75 호	제 25 차	1989. 11. 14	총재 김 건

의안 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 개정

의결사항 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, 제69조, 제72조

제의취지 그간의 노사분규, 급속한 임금상승 및 대외통상마찰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성장잠재력을 보강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투자 의욕 회복과 대외경쟁력 강화가 긴요하므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율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.

< 참 고 사 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

"한국은행법" 제7조

① 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~⑥ (생 략)

"한국은행법" 제69조

한국은행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
2. 다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

가. 이 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용증권

나.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물증권

다.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물증권

라. (생 략)

3. (생 략)

"한국은행법" 제72조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.

② (성 락)

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(안)

현행		개정 (안)		비고
1. 여신업무이율		1. 여신업무이율		
구분	이율	구분	이율	
1. 상업어음 재할인	연 8.0%	1. 상업어음 재할인	연 7.0%	- 1% 포인트 인하
2. 담보대출		2. 담보대출		
가. 무역어음 담보대출	연 8.0%	가. 무역어음 담보대출	연 7.0%	- 1% 포인트 인하
나. 농업어음 담보대출 (「한국은행의 농수축산어음 담보대출 취급규 정」 제2조 제1호)	연 3.0%	나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다. 수산업어음 담보대출 (「한국은행의 농수축산어음 담보대출 취급규 정」 제2조 제2호)	연 3.0%	다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라. 축산업어음 담보대출 (「한국은행의 농수축산어음 담보대출 취급규 정」 제2조 제3호)	연 5.0%	라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마. 방위산업어음 담보대출	연 8.0%	마. 방위산업어음 담보대출	연 7.0%	- 1% 포인트 인하

현행		개정 (안)		비고
구분	이율	구분	이율	
바.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취급규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중		바.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취급규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중		-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,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자금용,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, 부품산업 시설자금 등 관련자금의 금리 1%포인트 인하 - 산업합리화 관련대출금리 - 유동성조절자금 금리 - 교환결제부족 보전자금 금리
(1) 제1호에 의한 대출	연 8.0%	(1) 제1호에 의한 대출	연 7.0%	
(2) 제2호에 의한 대출	연 3.0%	(2)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(3) 제3호에 의한 대출	연 8.0%	(3)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(4) 제4호에 의한 대출	연 15.0%	(4)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
현	행	개	정 (안)	비	고
11. 기 타	1. 시행일자 : 1988. 9. 2 2. 경과조치 : ① 이 규정 시행일전에 금융기관이 다음의 대출을 취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 2-바-(1)의 이율을 적용한다. 가. 1981년도 수출산업설비자금대출 나. 1981년도 중소기업특별저리설비자금대출 다. '에너지' 절약시설자금대출 라. 정부의 정책사업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마.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대출 중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'수요자금융' 및 '서울시 지하철건설자금' ② 이 규정 시행일전에 금융기관이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」 등 증권담보대출취급규정」에서 정한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대출 (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자금융 및 서울시 지하철건설자금 제외) 을 취급한 경우 및 기업체권 강화대책과 관련한 토지개발채권 을 보유한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대출과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융자에 대하여는 증전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	11. 기 타	1. 시행일자 : 1989. 11. 15 2. 경과조치 : ① 이 규정 시행일전에 금융기관이 다음의 대출을 취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 2-바-(1)의 이율을 적용한다. 가. 1981년도 수출산업설비자금대출 나. 1981년도 중소기업특별저리설비자금대출 다. '에너지' 절약시설자금대출 라. 정부의 정책사업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(산 제) ③ 1988. 9. 1 이전에 금융기관이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」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규정」에서 정한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대출 (서울시 지하철건설자금 제외) 을 취급한 경우 및 기업체권 강화대책과 관련한 토지개발채권 을 보유한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증전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	- 1% 포인트 인하 - 규정 정비 - 현재 신규로 취급되지 않는 토지개발채권 관련대출 등에 대하여 증전 이율(연 5 ~ 6%) 계속 적용	